

보도시점 2026. 7. 30.(목) 15:30 (2026. 7. 31.(금) 조간)

“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 해양수산부 - 경찰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유재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는 7.30.(목)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영광에서 염전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엄정 대응*한 데 이어, 협력 체계를 상시화하여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고 인권친화적 염전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난 6월 영광 염전에서 노동자 감금·폭행·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사건 발생

(노동부) 강제근로, 폭행, 임금착취(163백만원) 등 위반 확인 → 형사입건 검찰 송치
(경찰청) 감금·횡령 등 위반 확인 → 피해자 응급입원 조치 및 임시숙소 연계,
사업주 구속수사 후 검찰 송치

각 기관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삼아 협약 내용을 충실히 실천할 계획이다.

❶ 합동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을 찾아내 엄정 대응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노동자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 감독, 염전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신매매 등 피해 징후 발견 시에는 구조지원비(생계·의료비·법률 등)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와 연계·협업할 계획이다.

② 신속하게 피해노동자 회복을 지원한다.

염전의 경우 고립된 작업환경 특성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피해노동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및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③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 등을 통해 노동권 보호의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염전의 열악한 노동 여건을 고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협약은 노동권 침해를 함께 찾아내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현장을 제대로 바꾸기 위한 실천의 약속이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제도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염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 간 더욱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하여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오늘 협약이 염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동자 인권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취약한 염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인권교육과 노동자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염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었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서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김보경 (044-202-7521)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미희 (051-773-5440)
		담당자	사무관	이대섭 (051-773-5617)
담당 부서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책임자	총 경	김산호 (02-3150-2070)
		담당자	경 정	김상승 (02-3150-2170)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산유통가공과	책임자	과 장	손영곤 (061-286-6905)
		담당자	사무관	김병열 (061-286-6980)



☐ **행사명: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7.30.(목) 15:30~16:10 / 광주정부합동청사(3층, 대회의실)
- (참석) 고용노동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전남경찰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등
- (협약 주요 내용)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 및 교육·지원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세부 일정 [행사 전체공개]**

일 정		주 요 내 용
15:30~15:3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5:35~15:45	'10	• 인사말씀
15:45~16:00	'15	• 그 간 조치사항, 협약 주요내용 소개 • 각 기관별 역할 발표
16:00~16:10	'10	• 업무협약 체결식 및 기념 촬영
16:10~	'1	• 폐회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 무 협 약 서

제1조(목적)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염전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근절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체결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고,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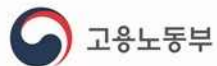
1. 염전노동자 인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염전노동자 고용실태를 합동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한다.
2. 피해 노동자 신변 보호 및 심리·생활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3. 노동관계법 교육 등을 통해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염전 노동환경 개선 및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제3조(정보공유 및 비밀유지) 협약체결기관은 협력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 교환·공유한다. 다만, 협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본 협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기본원칙) 협약체결기관은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고,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체결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6년 7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김 영 훈



해양수산부 장관
황 중 우



경찰청장
代 유 재 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 형 배